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4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가. 자동이체 수용가의 중복 납부 방지하기 위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수도요금 고지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
- 나. 또한 교육·복지시설에 대해 요금 감면 확대와 누수 감면 절차 명확화, 취약계층 감면 신설을 통해 지역사회 공공성 강화

2. 주요내용

- 가. 동의서 제출시 수도요금 고지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
- 나. 학교 수도요금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안 제37조)
- 다. 유치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수도요금 감면율(30%) 신규 적용(안 제37조)
- 라. 지하누수 감면 규정을 보완하여 신청 및 감면대상 기간을 명확히 하고 업체시공확인서, 자가수선확인서, 사진 등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안 제37조)

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 대한 요금 감면 신설(안 제37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조례안 예고기간: 2025. 9. 4. ~ 9. 9.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회장 (참조: 의회사무과장)
- 2) 전화: 061-830-6097, 팩스: 061-830-5595

- 붙임 1.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납부고지서**”를 “**납부고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고지서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 수용가가 동의서(별표 7)를 제출한 경우 수도요금을 미고지할 수 있다.

제37조제3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는 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제6호(종전의 제7호) 후단 중 “**감면범위**”를 “**감면 범위**”로, “**하며, 다음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표 참조)**”를 “**한다. 이 경우 누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8호) 전단 중 “**가구에**”를 “**가구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족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10%**”를 “**30%**”로 한다.

가. 누수감면 신청은 누수확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누수감면 대상 기간은 최근 3개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난 누수는 감면되지 않는다.

다. 누수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별표 6)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누수 수리를 완료하고 업체시공확인서(별표 8) 또는 자가수선확인서(별표 9)와 사진(전,중,후)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u>납부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u></p> <p>② (생략)</p> <p><u><신설></u></p> | <p>제34조(납부고지) ① ----- <u>납부고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고지서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 수용가가 동의서(별표 7)를 제출한 경우 수도요금을 미고지할 수 있다.</u></p> |
| <p>제37조(요금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생략)</p> <p>4. ~ 6. (생략)</p> <p>7. <u>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확인가능한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하며 <u>감면범위는 정상사용 3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다음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표 참조)</u></u></p> | <p>제37조(요금등의 감면) -----</p> <p>1.·2. (현행과 같음)</p> <p>12. (현행 제3호와 같음)</p> <p>3. ~ 5.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6. -----</p> <p style="text-align: center;">----- <u>감면 범위</u> -----</p> <p style="text-align: right;">----- <u>한다.</u></p> <p><u>이 경우 누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u></p>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 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평균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 (신설 2017.12.7. 개정 2019.1.)

<신 설>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누수감면 신청은 누수확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누수감면 대상 기간은 최근 3개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난 누수는 감면되지 않는다.

다. 누수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별표 6)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누수 수리를 완료하고 업체시공확인서(별표 8) 또는 자가수선확인서(별표 9)와 사진(전,중,후)을 제출하여야 한다.

7. -----
-- 가구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족에 -----

--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신 설>

[별표 9]

제시
누수시공 확인서 (별첨)

구분/항목
설 명
주 소

상기 본업이 사용하는 김의삼수도·관로에서 유
대누수가 발생하여 개관으로 복구하였으며 본업
의 '정구한 물일관' 취수에서 '누수기' 다시 '발생
시' 표급공법연결 대상자가 하담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김의삼수도

[붙임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 의 견 | 비 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